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해  
낚시어선 승객,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 안전사고예방,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2.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낚시어선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1.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에 승선할 경우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으로부터 승객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 환경·생태계 보존을 위해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요구사항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낚시어선업 신고를 마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 승선하여야 한다.
3.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모든 낚시인은 선상낚시 또는 무인도서 및 갯바위로 안내 받아 낚시중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4.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나.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기타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다. 낚시어선에서 술을 마시거나 위험물 반입 및 운송,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라. 인명구조 장비나 그 밖에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는 행위
  - 바. 영업제한구역이나 영업제한시간을 위반하여 낚시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사.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유류(油類)·분노미끼 등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
  - 아.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 자. 유해 낚시도구 및 부적합 미끼를 사용하는 행위
5.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피 등 낚시승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즉각 협조하여야 한다.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1. 영업구역의 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해사안전법, 원자력법, 항만법, 개항질서법 등에 따른 제한 및 통제구역,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시설, 간출암 등에서의 영업을 금지한다.
2. 영업시간의 제한  
가. 등화, 레이더, 무선설비, 레이더 반사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어선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 및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에 적합하지 않은 낚시어선은 야간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낚시승객의 안전상 해경, 관계 공무원 등의 철수 요구가 있을 경우 낚시어선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낚시어선의 승객의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낚시승객에게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출항 전 선체·기관·통신·구명장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음주 및 약물복용(환각물질 등)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조종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주취자·정신질환자·환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미만 어린이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마. 무인도에 낚시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낚시승객과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야영을 금지시켜야 하며,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발생시 낚시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잠수어업인 물질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낚시승객들에게 구명조끼 등 구명장비 사용법을 알려주고, 낚시어선을 이용 하는 모든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승선자란 낚시 어선업자 또는 선원, 선상낚시인 및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무인도서 및 갯바위 낚시터로 안내받은 낚시인 등 모든 낚시어선 이용자를 말한다.  
아. 사고발생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명구조 등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그밖에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낚시승객 및 낚시어선업자 또는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벌칙) 및 제55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행정처분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